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주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43

발의연월일: 2021. 5. 20.

발 의 자 : 윤주경 · 강기윤 · 김미애

김병욱 · 윤창현 · 이 영

이채익 · 조태용 · 최형두

추경호 · 태영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근로기준법」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성실한 근로계약 이행 및 직 장 내 괴롭힊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 등 기강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한편,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 등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.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4(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등) ①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,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1조의4(사회복무요원의 성실
	의무 등) ① 사회복무요원은
	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, 성실
	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②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
	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
	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
	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
	<u>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</u>
	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
	하여서는 아니 된다.